

한국모태펀드 2018년 2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 공고

2018년도 한국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I. 개 요

1. 출자 규모 및 출자 대상

항 목		세 부 내 용
출자 규모		총 1,150억원 이내 (문화 610억원, 과기정통 120억원, 관광 170억원, 영화 120억원, 환경 130억원)
기본 조건		· 창업자 및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 투자기간 내 약정총액의 60%이상을 조합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전문적으로 투자. 단, 조합 성격 등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는 해당 투자비율을 적용
출자 대상 및 신청 자격	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서 비상장 창업자(업력 7년 이내 중소기업)·벤처기업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
	한국벤처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서 중소기업·벤처기업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여성전문금융업법」 제44조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서 중소기업 등에 결성금액의 60% 이상 투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중소기업 등에 결성금액의 60% 이상 투자
운용사 선정방법		당사 홈페이지 공고 후, 접수된 제안서의 운용사, 운용전담팀, 조합 운용계획 등을 평가하여 선정
접수마감 시한		2018년 8월 10일(금), 14:00
조합 결성 시한		· 최종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적으로 유예기간 부여 가능)

* 출자 대상 업무집행조합원은 출자 대상 조합(및 회사)의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다만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를 신규 설립하여 투자조합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정 후 조합 결성이전에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전제로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고, 조합의 핵심인력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어야 함. 단, 선정된 이후 해당 회사 설립 및 조합 결성이 제안서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만 출자가 가능함

2. 출자 분야별 출자 계획 및 조합형태

※ 분야별 중복 신청 가능

※ 신청 현황에 따라서 모태출자 예산을 분할하여 다수 운용사 선정 가능하며 심사 결과 적합한 운용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출자하지 않을 수 있음

※ 문화·문화과기협력·관광·영화계정은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형태로만 신청 가능하며 환경계정은 출자대상에 명시된 모든 조합 형태로 신청 가능

(단위 : 억원)

계 정	분 야	모태펀드 출자예정액	결성 목표액	모태펀드 최대 출자비율	중점지원 해당여부
문화	게임	120	200	60%	○
	출판	70	100	70%	○
	콘텐츠기업육성	100	200	50%	○
	한-아시아 문화산업 공동발전	200	334	60%	○
	소 계	490	834		
문화 과기 협력	문화-ICT 해외진출 ^{주1)}	240	400	60%	○
관광	관광산업육성	170	280	61%	○
영화	중저예산 한국영화	120	170	71%	○
환경	미래환경산업	130	217	60%	○
총 계		1,150	1,901		

주1) 문화계정 120억원, 과기정통계정 120억원 출자예정

3. 출자 분야 및 투자 대상

계정	분야	주목적 투자 대상
문화 주1)	게임	○ 게임 관련 중소·벤처기업 및 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되, 약정총액의 20% 이상은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 및 해당기업이 제작하는 프로젝트 ^{주2)} 에 투자
	출판	○ 출판* 관련 중소·벤처기업 및 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되, 약정총액의 20% 이상은 설립 후 연간 매출액이 20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출판 관련 중소·벤처기업 및 해당 기업이 제작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여야 함 * 출판 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의 정의를 따름
	콘텐츠 기업육성	○ 문화콘텐츠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70% 이상 투자 * 약정총액의 20% 내에서 문화산업과 관련된 타 산업(IP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인 상품 개발 산업 등)에 투자 가능하며, 해당 금액은 별도 계좌 관리하여야 함
	한-아시아	○ 약정총액의 8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아시아 진출 콘텐츠 프로젝트 및 기업에 투자 ① 한-아시아 합작 프로젝트 ② 국내 콘텐츠 기업이 제작(제작지분을 일정비율 이상 보유하여야 함)하는 콘텐츠로서 아시아 자본을 유치(순제작비의 20% 이상)한 프로젝트(투자기간 내 충족) ③ 국내 콘텐츠 기업이 제작(제작지분을 일정비율 이상 보유하여야 함)하는 콘텐츠로서 아시아에서의 매출이 발생(총 매출의 20% 이상)한 프로젝트(투자기간 내 충족) ④ 위 각 호의 프로젝트 진행 예정인 중소·벤처기업 ⑤ 아시아에 현지법인, 합작법인을 설립했거나 하고자 하는 문화산업 영위 중소·벤처기업
문화 과기 협력	문화-ICT 해외진출	○ 문화콘텐츠 해외진출 중소·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30% 이상 투자하여야 하며, 디지털콘텐츠 해외진출 중소·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30% 이상 투자하여야 함. 해외진출 창업 초기기업에 투자 시, 해외진출에 실패하더라도 결성액의 20% 범위 내에서 주목적 투자로 인정. 단, 프로젝트 방식의 투자는 주목적 투자 의무 비율 산정에서 제외함 * 단일 투자 건으로 문화콘텐츠 해외진출 중소·벤처기업과 디지털콘텐츠 해외진출 중소·벤처기업으로 동시에 인정받을 수 없음 ** 해외진출 중소·벤처기업이란, 조합 해산시점 전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중소·벤처기업을 의미함 ① 해외에 현지법인, 합작법인을 설립한 중소·벤처기업 ② 수출비중을 높이거나 해외로 사업을 확장한 중소·벤처기업 ③ 외자유치 또는 해외 M&A를 한 중소·벤처기업 *** 약정총액의 20% 내에서 문화산업과 디지털콘텐츠 산업 및 정보통신 산업 외 타 산업에 투자 가능하며, 해당 금액은 별도 계좌 관리하여야 함
관광	관광산업육성	○ 관광 관련 기업 및 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되,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20% 이상 소액투자(건당 5억원 이내, 업체당 총 10억원 이내) 하여야 함 * 관광 관련 기업 및 프로젝트 ①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에 해당하는 기업 및 프로젝트 ② 관광산업 특수분류상 연관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및 프로젝트 ③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관광분야 벤처기업

계정	분야	주목적 투자 대상
		④ 한국관광공사가 발굴한 관광벤처기업 및 클라우드 펀딩 유치 성공 기업·프로젝트 ⑤ 융복합 및 혁신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기업 및 프로젝트(舊 창조관광기업) **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 : 창업지원법상 창업자 중 업력 3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 또는 창업지원법상 창업자로서 설립 후 연간 매출액이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중소·벤처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영화	중저예산한국영화	○ 한국영화에 100% 이상(타 분야 투자 금지) 투자하되, 중예산 한국영화에 약정총액의 50% 이상, 저예산 한국영화에 약정총액의 20% 이상 투자 1) 중예산 한국영화란 순제작비 50억원 이하의 한국영화 2) 저예산 한국영화란 순제작비 10억원 미만의 한국영화 * 기획개발투자 ^{주3)} (시나리오 완성이전 단계투자)시 해당 투자금액만큼 저예산 의무투자로 인정
환경	미래환경산업	○ 아래 투자대상 ①, ②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제외), 약정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중소기업에 투자하여야 함. 단, ②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는 경우에는 국내중소기업 투자의무비율(약정총액의 40% 이상)을 적용하지 아니함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환경산업 영위 기업(최근 2년간 환경 분야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에 한함) * 대주주와 대표이사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해외기업도 주목적 투자대상에 포함(약정총액 20% 이내)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환경시설의 개발·설계·시공·개선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특수목적법인 등. 다만, 해외특수목적법인에 대한 투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해외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 비율의 합이 50% 미만인 경우로 제한함

주1) 문화계정 공통적용 투자의무 비율

- 약정총액의 10% 이내에서 문화산업 외 타 산업에 투자 가능 하며, 해당금액은 별도계좌 관리(콘텐츠 기업육성 분야 제외)
- 원칙적으로 재투자 금지, 다만 매년 자펀드 투자 현황 점검(전략적출자자 관련 투자집중여부, 자펀드 수익률 등) 후 정기 조합원 총회에서 재투자 허용여부 결정

주2)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 및 해당기업이 제작하는 프로젝트란, ① 창업지원법 상 창업자 중 업력 3년 이내 또는 ② 창업지원법 상 창업자로서 설립 후 연간 매출액이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중소·벤처기업 및 해당기업이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의미함

주3) 기획개발투자시 준수사항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기준) 배제
- 상장기업(코스닥 등록기업 포함) 및 계열사 배제
- 제작사 지분투자 금지
- 제작 중인 영화 투자 금지
- 개발비 투자 후 3개월 이내 제작 착수 금지
- 프로젝트 별 3억원 초과 투자 금지

II. 선정 우대 및 선정 배제 등

1. 선정 우대기준 (1차 심사시 가점 부여)

구 분	문화	문화 과기 협력	관광	영화	환경
중점지원분야인 경우	○	○	○	○	○
창업투자회사 평가에서 A등급 이상 받은 경우(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 실시된 평가)	○	○	○	○	○
약정총액의 10% 이상 외국자본 출자 참여(서면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함)	○	○	○	○	○
일정기준 이상 출자자 참여 확정으로 신속한 펀드 결성이 가능한 경우(서면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함)	○	○	○		○
조합 존속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					○
결성목표액을 초과하여 출자자 모집을 제안하는 경우	○	○	○		○
문화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민간 재무적 투자자가 조합 출자에 참여한 경우	○				
영화진흥위원회가 권장한 표준계약서 적용 등 영화산업 공정경쟁환경 조성에 기여한 경우				○	
중저예산 영화 및 기획개발 투자실적이 있는 조합				○	
투자금 1억원 당 2명 이상 고용을 창출, 모태펀드 자조합에서 성과보수를 받은 경우					○

2. 선정 배제 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배제, 선정 보류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제재 가능

□ 선정 배제

◆ 선정 배제 대상은 **운용사 선정 전체 기간에 걸쳐 적용**하되, 아래 박스에 표시한 항목은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적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벤처투자(주)가 선정 배제 가능

가. 회사 및 조합 운영상 도덕적 해이 또는 제3자 경유 등을 통해 사실상 법령을 위반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나. 업무집행조합원이 법령 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법령위반 또는 시정명령 이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자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투자업체 발굴 및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주주 등 외부의 압력으로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독립적 의사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업무집행조합원이 자산건전성이 취약하거나 최근 2년 내 도덕적 해이,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제재가 확정된 경우

*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

- 1) 매출 및 영업이익 등 경영 성과와 관련된 지표를 이유로 투자계약서에서 합의된 기간 전에 투자금을 조기 회수하는 행위
- 2) 투자계약서에 합의된 투자금 조기회수 가능 사유로 인해 투자계약 만기전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통보 후 최소 2개월 이상 투자업체에게 상환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단, 투자업체와 합의할 경우 상환 준비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3) 국내 주식시장 상장 실패를 이유로 최초 계약시 정한 주식 가격을 30% 이상 조정하는 행위
- 4) 무담보전환사채 및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규 인수 방식으로 투자하면서 투자대상을 사실상 프로젝트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 규정 제7조의2에서 규정한 투자)로 한정하거나 프로젝트투자의 결과에 따라 투자 수익을 받는 형식으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마. 상법 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사원이 아닌 핵심인력을 포함하여 출자 신청한 경우

- 바. 운용사의 최대주주 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운용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형사상 피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운용사의 안정적 운영 및 자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 적용〉

-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증진기금 및 모태펀드의 누적출자금이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초과하는 경우 (LLC형은 제외)
 - ① 업무집행조합원 납입자본금의 25배
 - ② 자기자본의 10배
- ※ 창업지원법령상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한 조합은 정부 누적출자금 합산에서 제외
- 참여가 가능한 핵심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으로 신청 자조합 규모에 따라 대표펀드매니저 1명을 포함하여 다음의 최소 기준 인원 이상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 ① 신청 자조합의 규모가 300억원 이하인 경우 : 2명
 - ② 신청 자조합의 규모가 30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인 경우 : 3명
 - ③ 신청 자조합의 규모가 800억원 초과하는 경우 : 4명
- ※ 대표펀드매니저는 소속 운용사의 설립 근거 법령에 따른 전문인력이어야 함

참여가 가능한 핵심인력 기준

- ※ 신청 자조합의 각 핵심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투자조합(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핵심인력으로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 각 인력별로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투자조합과 신청 자조합을 합산한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인력은 핵심인력으로 참여 불가

* 투자의무비율 :

- 규약(정관)상 정하는 투자의무비율
- 규약(정관)상 정하는 투자의무비율이 없는 경우, 출자약정금 총액의 60%

1. 신청 자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투자조합의 수가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3개를 초과하거나, 약정액의 합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단 신청 자조합의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함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조합 운용 한도>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수의 합 ≤ 3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규모의 합 < 1,000억원

2. 신청 자조합의 참여인력이 참여인력으로 참여(규약상 명시된 경우) 하고 있는 투자조합의 약정액을 각 투자조합 참여인력수로 나눈 금액의 합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대표펀드매니저를 제외한 핵심인력의 개인별 투자조합 운용금액 한도>

Σ(각 펀드규모 ÷ 대표펀드매니저를 제외한 핵심인력 수) < 1,000억원

3.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운용 조합 규모 산정

- 신청조합 또는 기존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조합 규모 산정 시, 조합 규모에 대표펀드매니저 수로 나눈 금액을 각 대표펀드매니저의 운용금액으로 계산하여 적용
- 단, 운용 조합 수는 나누어 적용하지 않음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조합 운용 한도>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수의 합 ≤ 3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규모의 합 < 1,000억원

- 업무집행조합원이 법령 위반으로 경고 또는 시정 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집행조합원이 최근 3년 이내에 5회 이상,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 신청 자조합의 핵심운용인력이 '벤처캐피탈 임직원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분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처분	1회	2회 이상
경고	-	1년
감봉	1년	2년
직무정지	2년	5년

해임	5년	5년
----	----	----

* 일정기간은 의결일자로부터 상기 <표>의 기간까지임

** 횡수는 의결일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법령 위반 합산하여 산정, 경고 1회·감봉 1회는 감봉 2회로, 직무정지 1회·감봉 1회는 직무정지 2회로 산정함

- 신청 자조합의 핵심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참여한 모태 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모태 자조합의 관리보수가 삭감된 경우에 한함)
 - * 퇴직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최초 상실일 기준
- 신청 자조합의 핵심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참여하고 있는 모태 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재직 중인 상태로 유한회사(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신규 설립을 전제로 하여 신규 조합을 신청하는 경우

□ 선정 보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벤처투자(주)가 선정 보류 가능
 - 가. 조합운용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재심의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나. 운용사의 최대주주 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운용사의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형사상 피소되어 운용사의 안정적 운영 및 자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 업무집행조합원이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정부기관 등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 선정 취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벤처투자(주)가 선정 취소 가능
 - 가. 출자심의회에서 결정한 자조합의 최소 결성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추가 증액 방식을 통해 우선 결성한 조합은 예외로 함

나. 출자심의회가 결정한 출자조건을 업무집행조합원이 수용하지 않아 규약 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다. 제안서 또는 구술 내용 등에 허위 또는 중대한 은폐사실이 있는 경우

라. 핵심인력(대표 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 결성일 이전까지 겸직(조합의 업무 수행 이외에 타 법인으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 받거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을 해소하지 못한 경우

마. 선정 후 결성 총회까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여, 심사 당시 자조합 운용 여건과 현저히 달라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자심의회를 통해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

■ 최대주주 또는 대표 펀드매니저의 변동

■ 자조합에 참여하는 핵심인력이 과반을 초과하여 변동되는 경우

■ 신규로 다른 결성 조합의 핵심인력으로 참여하는 등 신청 자조합의 핵심인력이 선정 배제 사유의 「참여가 가능한 핵심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기타 자조합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 선정 배제에 해당하는 사유가 선정 후 확인 또는 발생된 경우

3. 제재 사항

- 결성 시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시한 내 조합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업무집행조합원 및 선정이 취소된 업무집행조합원(상기 선정취소 조건 중 가. 결성 규모미달인 경우 및 나. 출자조건 수용 거부인 경우는 제외)에 대해서는 각각 연장된 결성 시한일 및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최초로 도래하는 정시사업을 포함하여 최소 1회 이상 출자 제한 가능하며, 해당 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복수인 경우에는 책임 소재에 따라 출자 제한 여부를 각각 달리 적용 가능. 또한, 모태조합 출자자 요청시, 특정 출자분야의 경우 결성 시한 연장에도 시한 내 조합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업무집

행조합원에 대해 출자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모태펀드 출자자와의 협의를 통해 공고문에 반영하여 출자 제한 면제 가능

*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형 투자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핵심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 신규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여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도 연장된 결성 시한일 및 선정 취소된 날로부터 1년간 출자 제한

- 추가 증액 방식을 통해 우선 결성하였으나, 출자심의회에서 결정한 자조합의 최소 결성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최초 조합 결성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최소 1회 이상 출자 제한 가능
- 자조합이 만기해산일(해산 총회일 기준)까지 **규약상 투자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자조합의 해산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모태조합 출자 제한 가능**. 다만, 중점지원 분야 자조합 등으로서 약정총액 대비 모태출자비율이 60% 이상인 자조합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반드시 출자 제한
- 선정 조합 중 외국자본 및 문화계정의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의사로 인해 우대를 받았으나 실제 출자비율이 선정 시 우대받았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조합 결성일로부터 1년 범위 안에서 1회 이상 출자 제한

Ⅲ. 주요 출자 조건

항 목	내 용											
<p>업무집행조합원 의무출자비율</p> <p>한국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및 우선수익배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 약정총액의 1% 이상 ○ 원칙적으로 모태펀드는 조합의 운용 결과 손실 발생 시 우선손실충당을 요구하지 않으며, 우선손실충당을 하지 않음 ○ 예외적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손실충당 및 우선수익배분 비율은 운용사 제안 내역에 따라서 출자심의회에서 개별적으로 결정 - <환경계정> 모태펀드와 협력하여 출자하거나 신규 민간 출자자(공제회,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참여할 경우 운용사는 다음 표에서 그 출자자를 대상으로 우선손실충당과 우선수익배분 연동 ①~③ 방안 중 선택하여 제안할 수 있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caption data-bbox="710 824 1118 853">< 우선손실충당·우선수익배분 연동 ></caption> <thead> <tr> <th data-bbox="456 864 667 898">구분</th> <th colspan="3" data-bbox="975 864 1070 898">적용조건</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56 904 667 972">모태펀드의 우선손실충당 우선수익배분 적용 조건</td> <td data-bbox="667 904 916 972" rowspan="2">① 해당사항 없음</td> <td data-bbox="916 904 1149 972">② 민간출자자 약정액 10% 한도 IRR 7% 이상 수익 발생 시</td> <td data-bbox="1149 904 1382 972">③ 민간출자자 약정액 20% 한도 IRR 3% 이상 수익 발생 시</td> </tr> <tr> <td data-bbox="456 972 667 1039">모태펀드 우선수익 배분액</td> <td colspan="2" data-bbox="916 972 1382 1039">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액과 동일</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손실충당 금액은 적용대상 출자자의 출자약정액을 기준으로 산정 * 업무집행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과 특수관계인인 유한책임조합원, 정책기관(정부, 지자체,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공적기금 등) 등은 제외하되, 모태펀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 적용 가능 	구분	적용조건			모태펀드의 우선손실충당 우선수익배분 적용 조건	① 해당사항 없음	② 민간출자자 약정액 10% 한도 IRR 7% 이상 수익 발생 시	③ 민간출자자 약정액 20% 한도 IRR 3% 이상 수익 발생 시	모태펀드 우선수익 배분액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액과 동일	
구분	적용조건											
모태펀드의 우선손실충당 우선수익배분 적용 조건	① 해당사항 없음	② 민간출자자 약정액 10% 한도 IRR 7% 이상 수익 발생 시	③ 민간출자자 약정액 20% 한도 IRR 3% 이상 수익 발생 시									
모태펀드 우선수익 배분액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액과 동일										
<p>자조합의 투자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 약정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주목적 투자 대상에 투자 * ‘일정비율’ 이라 함은 해당 조합에 부여된 최소 투자의무비율(예시: 60%, 70%) ○ 모태펀드 출자비율이 공고문 상 최대 출자비율 보다 낮아질 경우, 투자 의무 비율 하향 조정 가능 ○ 다만, 모태펀드에서 결정한 조합 규모보다 실제 결성 금액이 증가되어 상기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모태펀드 출자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모태펀드 출자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최초 모태펀드에서 선정 시 결정한 조합 규모에 상기 비율을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투자 의무로 부여(관련 법령 상 투자의무는 전체 규모에 적용) 											
<p>증액방식조합 (Multiple Closing) 출자 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irst-closing이 조합 결성시한 내 이루어진 경우, 이후 Multi-closing은 최초 조합결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 가능 											
<p>출자금 납입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납, 분할납(draw-down), 수시납(capital call) 중 선택 가능 											
<p>자조합 존속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환경계정) 존속기간 5년 이상, 투자기간은 2년 이상부터 조합 존속기간 내 운용사 자율제안 ○ (문화과기 협력계정) 존속기간 8년 이상, 투자기간 5년 ○ (관광계정) 존속기간 8년 이상, 투자기간 4년 											

항 목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계정) 존속기간 5년, 투자기간 4년
관리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태펀드 자조합 기준규약에 따르되, 조합 결성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문화/과기정통/관광/환경계정) 관리보수 지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성일로부터 3년 내 : 조합약정총액×결성규모 적용요율 - 결성일로부터 3년 이후 : 투자잔액(분기말 잔액)으로 결성규모 적용요율 * 결성규모에 따른 적용요율 : 문화 계정은 2.0% 이내 적용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이 300억원 이하의 경우, 2.5% 이하 -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이 30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의 경우, 2.3% 이하 -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이 600억원 초과인 경우, 2.1% 이하 </div> ○ (영화계정) 관리보수 지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성일로부터 4년 내 : 조합약정총액기준 2.0% 이내 - 결성일로부터 4년 이후 : 투자잔액(분기말잔액)기준 2.0% 이내 ○ 관리보수율을 일정 비율 하향 시, 성과보수 지급비율을 상향하도록 운용사가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 체계를 선택하여 설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문화계정, 문화과기 협력계정 * 운용사 제안으로 관리보수율 0.1%p 하향 시 성과보수 지급률 2%p 상향^{주)} (관리보수율을 최대 0.5%p 하향조정 가능하며 이때 성과보수 지급률은 최대 10%p 상향 조정)
기준수익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문화과기 협력·환경계정 : 3% 이상 * 모태펀드 출자지분에 대해 기준수익률 차등 적용 가능 ○ 문화계정·영화계정 : 2% 이상 * 모태펀드 출자지분에 대해 기준수익률 차등 적용 가능
성과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이내, 문화계정은 30% 이내, 영화계정은 모태펀드 지분에 한하여 30% 이내로 적용 ○ 관리보수율을 일정 비율 하향 시, 성과보수 지급비율을 상향하도록 운용사가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 체계를 선택하여 설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문화계정, 문화과기 협력계정 * 운용사 제안으로 관리보수 0.1%p 하향 시 성과보수 지급률 2%p 상향^{주)} (관리보수율을 최대 0.5%p 하향조정 가능하며 이때 성과보수 지급률은 최대 10%p 상향 조정)
추가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계정, 문화과기 협력계정, 관광계정, 환경계정) 전체 투자 금액 대비 창업초기 기업에 투자된 투자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에서 모태펀드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별도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 ○ (환경계정) 투자금 누계액 1억원당 2명(1년 이상 고용된 내국인에 한함) 이상 고용창

항 목	내 용
	<p>출을 한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청년(만 15세 ~ 39세) 고용 창출을 한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5% 이내에서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별도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p> <p>※ 추가 인센티브는 상기 순서대로 적용하되, 중복 적용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 등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의 합계는 20%를 초과할 수 없음</p> <p>※ 추가 인센티브의 적용은 제안 내역에 따라서 출자심의회에서 개별적으로 결정</p>
수탁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벤처투자(주)가 수탁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수탁회사로 선정하여 조합자금 관리 ○ 조합의 미투자자산 중 일부는 수탁계약에 따라 은행, 증권회사의 확정금리부금융상품에 운용 가능 ○ 조합재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
회계감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벤처투자(주)에서 지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회계감사인을 선정
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RP 사용 의무화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사는 자펀드 투자기업의 고용 정보 및 그 증빙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모태펀드가 현저하게 적은 금액(출자비율 10%미만)을 출자하는 자조합의 경우 타출자자와 협의에 따라 상기와 다른 조건으로 적용 가능 ○ 문화계정, 문화과기 협력계정 프로젝트 투자 시 다음 사항 적용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p>1. 투자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배급하는 한국영화 프로젝트 투자금지 (단, 극장용 애니메이션은 제외) - 원금보장식 대출성 투자 금지 (원금상환약정 금지) - 임금 체불 제작사 투자 금지 - 출자자 관련 프로젝트 중 제작완료 후 배급·유통 단계 프로젝트 투자금지 - 주요 출자자가 제작한 프로젝트에 투자금지 - 주요 출자자가 메인투자자로서 관리하는 프로젝트 투자누계액은 조합 전체 투자누계액의 40% 미만이어야 함 - 영화제작 이후 영화 배급·유통 단계(개봉60일 이전 이후)에 투자하는 경우, 주목적 투자의무비율에서 제외 <p>2. 준수 의무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작완료 이전 단계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우 문화산업전문회사 의무등록 (단, 선정 조합 규약 협의 시, GP 책임하에 문전사 의무등록 예외 조항 반영가능) - 자조합 메인투자 시 영화·드라마 스태프 인건비 별도계정 의무설치(단, 자조합 부분투자시는 권고사항) - 문화체육관광부(관련 공공기관 포함)가 수립한 표준계약서 의무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영상(방송영상 제작, 방송출연, 방송영상제작스태프) 관련 표준계약서 · 공연예술 관련 표준계약서 · 영화(근로, 시나리오, 투자) 관련 표준계약서 * 순제작비 10억 미만 영화는 인건비 우선집행 및 최저시급 준용으로 표준 계약서 적용 의무 대체 가능 - 공연예술 분야 투자시, 해당 공연의 전산화 된 예매정보(관객수 및 티켓판매 금액)를 연예술통합전산망(www.kopis.or.kr)에 제공하는데 동의하여야 함 </div>

항 목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계정 관련 적용사항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10px;">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자자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투자·배급·상영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조합 출자 및 관련 프로젝트 투자금지(단, 극장용 애니메이션은 허용) 2. 계정 구분 운영 및 계정 별 준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의 자산은 중예산, 저예산 및 일반영화계정으로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함 3. 프로젝트 투자 관련 준수 의무 사항(중예산, 저예산 및 일반영화계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별도 계좌 운용 - 투자심의위원회 개최 전, 영화 스태프 등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하여 분쟁중이거나 소송 중에 있는 제작사 및 회사(관계자인 대표, 주주까지 포함) 관련 프로젝트는 투자 금지(영화산업협력위원회 영화인 신문고 기준) - 스태프인건비 체불방지 조항 투자제작계약서 상 의무삽입 - 연도별 투자실적 평가 및 피드백(조합결성 2년 내 결성총액의 50%, 4년 내 100%를 중저예산 및 일반영화에 누적 투자)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고시 '표준 시나리오, 근로, 상영, 투자 계약서' 의무 적용 (순제작비 10억 미만 저예산 영화는 표준계약서 적용을 권장하고 인건비 우선집행 및 최저시급 준용으로 제작환경 개선의무를 대신함.) 단, 근로기준법 개정시 개정된 법률에 따름 - 중저예산영화는 제출한 투자이행계획에 따라 투자 - 주요출자자(조합의 10% 이상 출자자) 관련 영화프로젝트의 경우 주요출자자가 메인투자자일 경우에만(직접제작영화는 투자금지) 허용되며 주요출자자들의 관련 프로젝트 투자총액을 조합 총 투자액의 50% 이내로 제한 - 동일 프로젝트에 연 투자실적 20% 이상 투자금지(단, 조합원 동의하에 인정 가능) - 상기 투자 의무비율 및 의무사항 미이행 시 해당 기간의 관리보수 지급을 감하며, 2회 이상 미이행 시에는 조합을 해산할 수 있음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선정된 업무집행조합원과 개별 협의

주) 적용 예시

구분	상황	조정 전		조정 후		비고
		관리보수	성과보수	관리보수	성과보수	
조정예시①	총 300억원 규모 펀드 결성예정인 A운용사가 관리보수율을 0.2%p 하향	2.5%	기준수익률 초과하는 수익의 20%	2.3%	기준수익률 초과하는 수익의 24%	관리보수율 0.2%p하향 → 성과보수율 4%p 상향
조정예시②	총 500억원 규모 펀드 결성예정인 B운용사가 관리보수율을 0.3%p 하향	2.3%	기준수익률 초과하는 수익의 20%	2.0%	기준수익률 초과하는 수익의 26%	관리보수율 0.3%p하향 → 성과보수율 6%p 상향

IV.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 공고 → 제안서 접수 → 1차 심의(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
→ 2차 심의(운용사 제안서 PT) → 최종 선정
- 선정 일정 (세부 일정은 계정별 또는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일 자	내 용	비 고
'18. 8. 10.(금)	제안서 접수 마감	14:00까지
'18. 8월말	최종 선정결과 발표	홈페이지 게재
'18. 11월말	조합 결성 완료	최종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V. 지원 방법 및 출자 설명회

○ 지원 방법

- 현장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선택 가능

가. 현장 접수 : 제안서 양식(붙임 1. 참조)에 의거한 제출 서류 및 그 내용을 포함한 **USB메모리**를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마감일까지 제출

나. 온라인 접수 : 신청 매뉴얼(붙임 2. 참조)에 따라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 (아래 주소)**을 통한 신청 정보 및 제출 서류 등록(제본용 제출서류 3부, 제출서류 중 원본)

<http://install.k-vic.co.kr>

○ 접수 마감일

가. 현장 접수 : 2018. 8. 10.(금) 14:00

나. 온라인 접수 : 2018. 8. 10.(금) 10:00

* 온라인 접수는 공고시부터 접수 마감일 전날까지는 24시간 접수하나, 접수 마감일은 10:00까지만 접수

* 온라인 접수 시 제본용 제출서류 3부, 제출서류 중 원본은 접수 마감일 14:00까지 우편, 퀵서비스 등으로 송부(현장 접수 필요 없음)

○ 출자 설명회

- 일 시 : 2018. 7. 17.(화) 15: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지하1층 블루룸
- ※ 설명회 참석시 공고문 출력하여 지참 요망

VI. 기 타

-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 사실 기재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함

VII. 접수처 및 문의 방법

- 현장 접수처 : 한국벤처투자(주) 투자운용본부
(06595)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서초동 1706-5) VR빌딩 지하 1층
- 문의 방법
 - 가. 문화, 문화과기협력계정 : 02-2156-2096, yeonkyung.ji@k-vic.co.kr
 - 나. 관광 계정 : 02-2156-2485, khj0720@k-vic.co.kr
 - 다. 영화 계정 : 02-2156-2161, jaewon_lee@k-vic.co.kr
 - 라. 환경 계정 : 02-2156-2187, dhsohn@k-vic.co.kr
 - 마.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02-2156-2479, datacenter@k-vic.co.kr

2018. 7. 13.

한국벤처투자(주) 대표이사

1차심사 중 서류심사 평가항목

대분류	소분류	주요 평가항목
운용사	최대주주 재무평가	자본금 및 자본충실도, 총자산 수익률
	운용사 재무평가	자본충실도, 총자산수익률
	조합운용실적	청산조합 수익률, 모태펀드 자펀드 평가수익률
	투자실적	출자약정액 대비 누적투자금액, 인력당 타 참여조합 미 투자잔액
	운용사 관리능력	운용사 관리인력 1인당 운용사의 운용자산, 최근 법규 등 위반내용
조합 운용 능력	핵심인력 경력	핵심인력의 경력, 대표펀드매니저의 펀드운용 경험, 신청 펀드 집중 가능 여부
	핵심인력 투자실적	투자/회수 실적, 투자 금액
	팀웍 및 관리능력	대편/참여인력이 팀으로 함께 근무한 기간(평균), 인력 퇴사로 인한 관리보수 삭감내역, 임직원 제재 사항
가점 등	공고문 Ⅱ-1의 선정 우대기준 참조	

* 총 100점 만점 중 운용사 50점, 조합운용능력 50점이며, 가점은 최대 20점

* 창투사 이외의 운용사에 대한 평가비중 및 평가항목은 다소 상이함